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를 자산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 삼성KODEX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
 증권[주식-파생형]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2.02.17 - 2012.12.31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
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우증권,
 유진투자증권, 우리투자증권, 현대증권,
 SK증권, 동부증권, 케이비투자증권,
 크레디트스위스증권, 골드만삭스증권,
 하이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리딩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06.01	제38조(투자신탁보수)	① ~ ③ 1. 운용보수율: 연 1,000분의 7.5 2. 지정참가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0 3. 신탁보수율: 연 1,000분의 0.4 4. 일반사무보수율: 연 1,000분의 0.4	① ~ ③ 한다. 1. 운용보수율: 연 1,000분의 7.0 2. 지정참가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5 3. 신탁보수율: 연 1,000분의 0.2 4. 일반사무보수율: 연 1,000분의 0.2

2012. 12. 17	투자신탁 명칭	삼성KODEX 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[주식-파생형] 재간접형]	삼성KODEX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2012. 12. 17	제1조(목적 및 종류 등)	①~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구자신탁재산을 주식, 채권,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분산투자하되, KOSPI200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위험회피의 목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100분 10을 초과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한다. 특히, 투자신탁재산의 100분 10을 초과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한다. 특히, 이 투자신탁은 주로 KOSPI200주가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손익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KOSPI200주가지수를 기초지수로	①~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구자신탁재산을 주식, 채권,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분산투자하되, KOSPI200주가지수 구성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위험회피의 목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100분 10을 초과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한다. 특히, 이 투자신탁은 주로 KOSPI200주가지수 구성종목 및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손익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KOSPI200주가지수 구성종목에 있어 그

		하는 집합 투자증권 및 KOSPI200지 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에 투 자하여 기 초지수 일 간변동률의 양(陽)의 2 배수로 추 중한다. 양 (陽)의2배 수로 추중 함에 있어 그 운용 방 법은 주식, KOSPI200주 가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 지수집합투 자증권 및 KOSPI200주 가지수 관 련 장내 선 물 및 합성 선물의 매 수포지션 등을 통하 여 운용한 다. 이하생략	운용 방법은 KOSPI200주가 지수 구성종 목, KOSPI200 주가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 수집합투자증 권 및 KOSPI200주가 지수 관련 장 내 선물 및 합성선물의 매수포지션 등을 통하여 운용한다. 이하생략
2012. 12. 17	제 12조(투 자신탁회 계기간)	이 투자신탁 의 회계 기간은 투 자신탁의 최초설정 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. 다 만, 신탁계 약 해지시 에는 투자 신탁회계기 간 초일부 터 신탁계 약의 해지 일까지로 한다.	이 투자신탁 의 회계기간 은 투자신탁 의 최초설정 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 다. 다만, 2012년 2월 16일 경과후 에 도래하는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 에 기간으로 하며, 신탁계 약 해지시에 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 일부터 신탁 계약의 해지 일까지로 한

			다. 1. 2012년 2 월 16일 경과 후의 최초회 계기간: 2012 년 2월 17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 지 2. 제 1호의 회계기간 경 과후의 회계 기간: 201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
2012. 12. 17	제34조(투 자대상등)	①집합투자 업자는 투 자신탁재산 을 다음 각 호의 투자 대상 및 투 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~5. 생략 6. 법 제110 조에 의하 여 신탁업자 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9조제 21항에서 규정한 집 합투자증권 (이하 “집 합투자증권 등”이라 한다)	①집합투자 업자는 투 자신탁재산 을 다음 각 호의 투자 대상 및 투 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~5. 생략 6. 법 제110 조에 의하 여 신탁업자 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9조제 21항에서 규정한 집 합투자증권 (이하 “집 합투자증권 등”이라 한다)
2012. 12. 17	제 35 조 (투자한 도)	①집합투자 업자는 제 34 조의 규 정에 의하 여 투자신탁 재산을 운 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·운용 한다. 1. 집합투 자증권등에 의 투자는 투자신탁	①집합투자 업자는 제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투자 ·운용한다. 1. 주식에 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. 2. 집합투자

		<p>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초과로 한다.</p> <p>2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.</p> <p>3.~8. 생략</p> <p>9. 제 1호 내지 제 5호의 자산에 대한 투자의 함(양도성 예금 증서 제외)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.</p>	<p>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.</p> <p>3.~8. 생략</p> <p>삭 제</p>
2012. 12. 17	제36조 (운용 제한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.</p> <p>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.</p> <p>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.</p> <p>1. 생략</p> <p>삭 제</p>

		<p>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(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(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(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)의 집합투자채산을 외화</p>	
--	--	---	--

	<p>자산으로 100분의 90 이상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나.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집합투자증권(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)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다.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(외국 집합투자기구의</p>	<p>2.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3.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4.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</p>
--	--	--

	<p>경우에는 법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)의 집합투자자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(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)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)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라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(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(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</p>	<p>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5.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(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) 또는 투자중개업자(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)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 77 조제 4 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6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_____ 투자할 수 있다. 가. 생략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_____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주택저</p>
--	---	---

		<p>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(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자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(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)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하는 행위</p> <p>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</p>	<p>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이하 생략</p> <p>② 제 35 조 및 이 조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35 조제 1 항제 6 호 내지 제 8 호, 이 조 제 1 항제 6 호 내지 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</p>
--	--	--	---

		<p>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(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집합투자자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(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)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3.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100</p>	<p>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~5. 생략</p> <p>③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은 이 조 제 1 항제 6 호, 제 8 호 및 제 9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
--	--	---	---

		<p>분의 40 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4. 사모집합투자기구 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5.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6.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</p>	
--	--	--	--

		<p>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(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) 또는 투자중개업자 (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)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 77 조 제 4 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7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</p> <p>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생략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</p> <p>국가가 발행한 채권, 주택저당채권,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p>	
--	--	---	--

		<p>에 의한 주 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또는 금융 기관이 지 급 보증한 주택저당채 권담보부채 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 에 투자신 탁 자산총 액의 100 분 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하생략</p> <p>② 제 35 조 및 이 조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 에서 정하 는 사유로 인하여 불 가피하게 제 35 조제 1 항제 6 호 내지 제 8 호, 이 조 제 1 항제 2 호, 제 7 호 내지 제 10 호의 규정 에 의한 투 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 다. 다만, 부도 등으 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 각이 가능 한 시기까 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 으로 본다.</p>	
--	--	---	--

		<p>1.~5. 생략 ③투자신탁 의 최초설 정일부터 1 월간은 제 35 조제 1 항 제 9 호, 이 조 제 1 항 제 2 호, 제 7 호, 제 9 호 및 제 10 호의 규정 을 적용하 지 아니한 다.</p>	
2012. 12. 17	제38조(투 자신탁보 수)	<p>①~② 생략 ③-1. 운 용보수율: 연 1,000 분 의 7.0</p> <p>2. 지정 참가회사보 수율: 연 1,000 분의 0.5</p> <p>3. 신탁 보수율: 연 1,000 분의 0.2</p> <p>4. 일반 사무보수 율: 연 1,000 분의 0.2</p>	<p>①~② 생략 ③-1. 운용 보수율: 연 1,000 분의 5.8</p> <p>2. 지정참 가회사보수 율: 연 1,000 분의 0.2</p> <p>3. 신탁보 수율: 연 1,000 분의 0.2</p> <p>4. 일반사 무보수율: 연 1,000 분의 0.2</p>
2012. 12. 17	제39조(투 자신탁재 산의 운용 비용등)	<p>①생략 ②제1항에 서 “ 비 용 ” 이라 함은 투자 신탁재산과 관련된 다 음 각호의 비용을 말 한다. 1.~4. 생 략 5. 수익자 총회 관련 비용</p>	<p>①생략 ②제1항에서 “비용” 이라 함은 투자신탁 재산과 관 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~4. 생략 5. 전체 수익 자로 구성되 는 수익자총 회 관련비용</p>
2012. 12. 17	제40조(투 자신탁의 집합투자 업자는 다 집합투자 업자)	①집합투자 업자는 다 집합투자 업자	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 투자업자

	해지)	<p>음 각호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</p> <p>1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</p> <p>2. 집합투자업자가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</p>	<p>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</p> <p>2.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</p> <p>3.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.</p> <p>4.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</p>
--	-----	--	---

	<p>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(이하 "해지기준일"이라 한다)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제 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인 경우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</p> <p>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</p> <p>2.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</p> <p>3. 투자신탁의 피출수합병</p> <p>4.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</p> <p>5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 1항제 3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의</p>
--	---	---

			하여 이 투자 신탁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해 지사유, 해지 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 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 을 집합투자 업자의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 결제원을 통 하여 수익자 에게 통지하 여야 하며, 제 2 항제 5 호 의 규정에 의 하여 이 투자 신탁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신탁 계약의 해 지일로부터 1 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, 해 지일자, 상환 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 항을 한국거 래소에 공시 하고 제 48 조 의 규정에 따 라 공고하여 야 한다.
2012. 12. 17	제41조(이익분배)	① 생략 1. 지급기 준일: 회계 기간말일의 영업일 이하 생략	① 생략 1. 지급기준 일: 회계기간 종료일, 다만 회계기간 종 료일이 영업 일이 아닌 경 우 그 직전 영업일 이하 생략
2012. 12. 17	제48조(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)	①- 1. 투 자운용인력 의 변경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	①-1. 투자운 용인력의 변 경이 있는 경 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

		하여 자산 보관·관리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 사를 통하 여 직접 또 는 전자우 편의 방법 으로 교부 하여야 한 다.	운용인력의 운용경력(운 용한 집합투 자기구의 명 칭, 집합투자 재산의 규모 와 수익률을 말함)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 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 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, 예 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 편의 방법으 로 교부하여 야 한다
--	--	--	--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 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 약 기 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 인명	계 약 기 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안진회계 법인	1 년	660 만원	서면 계약	-	-	-	-	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
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 - 해당사항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